

폴란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김 중 길 ▶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며

II.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정 폴란드민법의 주요 내용

1. 일반적 규정내용
2. 구체적 규정내용: 매매 편

III. 개정 폴란드소비자법의 주요 내용

1. 법률의 적용범위
2.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3.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효과

IV.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 외국 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소비자보호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EU시장 전체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기준을 마련하였다. 폴란드에서 소비자보호의 사고는 유럽 최초의 성문 헌법인 폴란드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공공기관은 건강, 프라이버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부당한 시장거래로부터 소비자와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고, 그 보호범위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¹⁾ 폴란드입법자는 이 조문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건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소비자보호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법률 속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2월 EU소비자권리지침²⁾이 발효되어 최근 유럽연합에서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영역으로 각인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고,³⁾ 지침의 효력에 따라 폴란드에서도 이 지침을 자국법령에 반영해야 했다.⁴⁾ 폴란드는 EU소비자권리지침을 특별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부 내용은 민법전에 별도의 독립적인 장을 마련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5년 12월 EU소비자권리지침을 완전하게 전환한 특별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⁵⁾(이하 ‘소비자법’이라 한다)이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소비자법의 영향으로 폴란드의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법률들이 변경 또는 삭제되었다. 특히 「개

- 1) 폴란드헌법(Konstytucja Rzeczypospolitej Polskiej) 제76조: Władze publiczne chronią konsumentów, użytkowników i naiemców przed działaniami zagrażającymi ich zdrowiu, prywatności i bezpieczeństwu oraz przed nieuczciwymi praktykami rynkowymi. Zakres tej ochrony określa ustawa.
- 2)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2011 L 304, p. 64 ff.
- 3) EU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 내용과 유럽연합 내에서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중길,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3쪽 이하 참조.
- 4)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방문판매지침(85/577/EEC), 기획여행지침(90/314/EEC), 통신판매지침(97/7/EC)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개별 유럽연합지침을 폴란드에서도 자국법으로 전환한 바 있고, 당시에는 특별법 형태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입법은 이미 폴란드의 법률규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5) Ustawa z dn. 30 maja 2014 r. o prawach konsumenta(<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140000827>).

별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⁶⁾ 및 「소비재매매에 대한 특별조건 및 민법전 개정에 관한 법률」⁷⁾이 그 효력을 잃었으며, 폴란드 민법전에서 채권각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수 개정되었다.

이미 2000년 초에 소비자법의 사전작업에서 폴란드입법자들은 소비자 관련 개별 법률들을 민법전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소비재매매에 관한 법률을 민법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나, 특별법으로의 전환이 민법전으로의 통합보다 현실에서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법전으로의 통합시도를 포기하였다.⁸⁾ 이는 당시의 다른 법률 통합에도 반영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이유들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소비재매매규정은 민법과 소비자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도 양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먼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민법전의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고(Ⅱ),⁹⁾ 개정 소비자법의 핵심적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Ⅲ),¹⁰⁾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Ⅳ).

II.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정 폴란드민법의 주요 내용

1. 일반적 규정내용

먼저 EU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 중 일부는 사법의 토대가 되는 폴란드민법전¹¹⁾에서

- 6) Ustawa z dnia 2 marca 2000 r. o ochronie niektórych praw konsumentów oraz o odpowiedzialności za szkodę wyrządzoną przez produkt niebezpieczny(<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000220271>).
- 7) Ustawa z dnia 27 lipca 2002 r. o szczególnych warunkach sprzedaży konsumenckiej oraz o zmianie Kodeksu cywilnego(<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021411176>).
- 8) Kordasiewicz, Bogudar, Änderungen im polnischen Zivil- und Handelrecht, in: Horn, Norbert(Hrsg), Die Neugestaltung des Privatrechts in Mittelosteuropa und Osteuropa. Polen, Russland, Tschechien, Ungarn, München 2002, S. 67.
- 9) 폴란드민법의 조문내용은 폴란드민법전과 Lane, Alexander/Gralla, Erhardt(Übers.), in: Breidenbach, Stephan(Hrsg), Handbuch Wirtschaft und Recht in Osteuropa, Bd. 2, PL 200, München 2015의 폴란드민법 독일어 번역본을 함께 참조하였다.
- 10) 폴란드소비자법상 조문내용은 폴란드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과 de Vries, Tina, Aktuelle Entwicklungen des polnischen Verbraucherschutzrechts, Wirtschaft und Recht in Osteuropa(WiRO) 2015, S. 229 ff.의 주요내용을 함께 참조하였다.

찾아볼 수 있다.¹²⁾ 민법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개념과 같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본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서 의미하는 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개정 민법에 의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2003년 구민법 총칙 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¹³⁾ 구민법 제22조의1에 따르면, 소비자(konsumenta)는 ‘사업상 또는 직업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개정 민법에서는 기존 소비자 개념에 ‘사업자와의’ 법률행위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소비자는 자연인으로서 사업자와 관계를 맺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은 소비자로 간주될 수 없다. 사업자(Przedsiębiorca)의 개념은 변경되지 않았다.¹⁴⁾

다음으로 제3편(채무) 제3장(계약상 채권관계에 관한 일반규정)¹⁵⁾ 채권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에 제383조의1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지급방식의 사용과 관계있는 대금은 사업자가 그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즉 사업자가 해당 지급방식의 사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소비자와 일정한 지급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약정한 대금을 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면, 통신판매계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계약 등 모든 소비자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3편 제7장(의무이행과 이행거절의 효과) 채권총칙에서 인도 시 급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급부장소에 관한 기준의 규정 제454조 뒤에 제454조의1을 추가적

11) Ustawa z dnia 23 kwietnia 1964 r. Kodeks cywilny(<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19640160093>); Motyka-Mojkowski, Mariusz, Polnisches Zivilrecht AT, Poliske prawo cywilne - czóesc ogólna, Bd. 1, Warszawa, 2010 S. 1 ff; 폴란드민법에서 관한 국내의 초기연구로는 법무부, “폴란드 民法(物權法 · 債務法 · 相續法)”, 「사법행정」, 제32권 제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51쪽 이하 참조.

12) 1964년 4월 23일 제정된 폴란드민법전은 1989년 4월 7일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유권 보장을 확보하였고,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사법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13) 독일, 네덜란드, 체코 등이 자국 민법전에 직접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별도의 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하여 여기에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4) 구민법 제43조의1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상 또는 직업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 법인 및 민법 제33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15) 본고에서 폴란드민법의 체계구조에 관하여 KSIEGA(편), TYTUL(장), DZIAŁ(절), Rozdział(관)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6) 제Ⅱ장에서 조문에 대한 별도의 법명 표시가 없으면 개정 폴란드민법을 의미한다.

으로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해 물건을 특정한 장소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 그 장소가 이행지로서 간주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약정은 무효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판매한 물건을 소비자의 주거지로 인도해야 할 경우, 물건의 우연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위험을 이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¹⁷⁾ 이는 급부장소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인 제454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제와 관련하여 제492조의1을 신설하였다. 즉 급부의무가 있는 일방당사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추가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급부이행을 위한 특정한 기간의 경과 이전에도 가능하다.

2. 구체적 규정내용: 매매 편

개정 폴란드민법에서 핵심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대부분은 매매(Sprzedaż)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소비재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내로 통합되면서 매매 규정 이하에 규율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폴란드 매매계약에서는 지금까지 세가지 형태의 담보책임이 있었다. 첫째 폴란드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둘째 소비재매매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에 따른 물품의 특성과 관련한 규정, 셋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관련한 규정이다. 소비재매매에 관한 법률이 민법으로 통합되면서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되고,¹⁸⁾ 담보책임 및 보증 등의 내용이 통일화되어 소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543조의1은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자체없이 인도해야 하며, 늦어도 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지체의 경우에 매수인은 물건의 인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을 확정하거나 매매계약 기간만료 후 해제할 수 있다.

17) 이와 함께 매매계약상 배송거래와 관련해서도 제548조 제3항에서 제454조의1의 규정내용과 같은 정도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주거지로 판매한 물건을 배송할 경우, 물건의 우연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위험을 이제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18) 구민법 제535조의1에 따르면, 민법의 규정은 소비재매매에 관해 특별 규정으로 규율해 놓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개정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1) 정보제공의무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EU소비자권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이 민법 내로 전환된 것이다. 신설된 제546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물건과 관련한 사항 및 권리관계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의무도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제공의무가 이제 단순히 부수적 주의의무 규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46조의1에 따르면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을 바르고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는 이해할 수 있으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자국어(폴란드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할 정보내용은 특히 물건의 유형,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표시, 안전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특별법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 있다. 물건을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상점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정보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건을 제대로 고르고, 물건의 품질, 기능, 완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상점 내에 기술적 및 구조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양한 계약조건들을 설명해야 하고, 폴란드어로 된 사용설명서 및 기타 서류 등 판매한 물건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 구성요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

매매에서 담보책임과 보증의 통일은 개정 민법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통일은 하자의 개념에 근거하여 매도물건의 특성에 대한 매도인의 기본적 책임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이는 EU소비자권리지침상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특성으로서 물건하자의 내용을 제556조의1에 전환한 것이다. 특히 물건이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물건이 계약에 명시된 목적, 제반 상황 또는 용도에 따른 유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물건이 보증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 물건

이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알린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물건사용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유보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하자와 관련된다. 그리고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보증은 매도인의 보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물건의 부적절한 조립 또는 그 작동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 의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립 및 작동을 한 매수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소비재매매에서의 추정도 중요하다. 제556조의2에 따르면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 매도물건의 인도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물건하자는 위험의 전환시점에 대해 이미 인도 시에 하자 또는 원인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¹⁹⁾ 따라서 매수인은 입증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살핀다. 권리하자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매도물건이 제3자의 소유물이거나 제3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관할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물건의 사용 및 처분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권리매매의 경우에도 제556조의3에 따라 매도인이 권리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법률적 추정과 함께 위험의 전환에 관한 내용도 제5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위험의 전환에서 매수인에게 존재하는 하자 또는 그 시점에 매도물건에 존재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 등 이러한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민법에서보다 종류매매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확장되었다. 제557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하자를 알고 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보증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매도인의 책임면제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매도인이 보증을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물건이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거나 계약체결 전에 물건이 바로 고쳐져 있었던 경우에 물건이 이러한 공공보증에 의해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 및 소비자에 모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관련하여 구민법에서보다 동산에서 1년, 건물에서 3년 더 길게 규정되었다. 즉 제568조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새 동산에서는 2년, 건물에서는 5년이고, 매수인이 소비자이고 매매물건이 사용된 동산에서는 물건의 인도 시부터 1년

19) EU의 다른 국가에서는 보통 물건 인도시점부터 6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 또는 위험원인에 대해서만 추정한다.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된다. 하자의 수리 및 제거청구권 또는 다른 물건으로의 교환 청구권은 하자 발견 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상실된다. 다만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담보책임에서의 매수인의 권리

하자담보책임규정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내용도 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매수인에게 대금감액, 계약해제, 물건의 교환에 대한 권리 또는 하자의 제거에 대한 권리 등의 구제수단이 주어졌다. 그러나 우선 하자제거에 대한 권리 는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60조에서 하자의 제거가 지체없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불쾌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교환 또는 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 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이미 교환하였거나 물건을 수리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였으면, 매수인은 즉시 대금감액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²⁰⁾ 이때에 대금감액은 하자있는 물건의 가치에 따르고,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는 배제된다. 하자있는 물건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매 수인은 물건의 하자제거 또는 교환과 함께 매도인이 교환한 물건을 재설치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매도인이 재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 로 설치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매도인은 물건의 해체 및 설치의 비용이 매매대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판매한 물건의 해체 및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매수 인이 소비자인 경우, 매도인은 해체 및 설치를 위한 비용을 매매대금액까지는 부담하 지만, 그 이상의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해야 한다. 계약해제 시 하자의 복구 또는 물건의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장소로 하자있는 물건을 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있는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할 때에 는 매도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²¹⁾

20) Keller, Max-Lion, "E-Commerce Recht in Polen Neue wichtige Bestimmungen des polnischen Verbraucherrechts", 2015(http://www.it-recht-kanzlei.de/polen-verbraucherrecht-agb.html#abschnitt_4).

21) 폴란드민법 제560조의1부터 제560조의4에서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하자의 경우에는 제574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금감액,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진다.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소극적 계약이익)에 따른다. 물론 이행이익(적극적 계약이익)은 제471조 이하의 채권총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증

끝으로 매매에서 보증과 관련하여 제577조 및 제577조의1에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57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의 승낙은 보증인의 의무를 포함하고, 판매한 물건이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의 권한이 표시로 언급한 보증인의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증표시는 광고로도 할 수 있다. 보증표시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문서화해야 하고, 폴란드어로 작성해야 한다. 제577조의1에서 보증표시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폴란드어로 작성할 때 이름, 상표, 상점명, 고유표시 등은 폴란드어로 번역하지 않으며, 이름, 주소, 보증기간, 보증범위 등 보증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 의무내용을 위반하더라도 보증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보증인의 주된 의무는 제577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상환, 물건의 교환 및 수리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을 포괄한다. 보증으로 판매한 물건의 품질과 관련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이면, 보증인이 물건의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보증에 기한 청구권 또는 물건하자에 의한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보증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멸시효가 저지된다. 보증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거나 하자제거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III. 개정 폴란드소비자법의 주요 내용

폴란드헌법에서 민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규정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청구권 규정의 대부분은 별도의 소비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규정의 형태는 지침 또는 규정 등 지금까지의 EU법의 전환

및 적용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개정 폴란드소비자법은 총 7개의 장(Rozdział)과 2개의 부칙(Załacznik)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7조), 제2장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 또는 통신판매계약 이 외의 계약에서의 사업자의 의무(제8조~제11조), 제3장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 또는 통신판매계약에서의 사업자의 의무(제12조~제26조), 제4장 계약철회권(제27조~제38조), 제5장 금융서비스통신판매계약(제39조~제43조), 제6장 조문변경(제44조~제50조), 제7장 이행 및 종결규정(제51조~제55조)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부칙에 철회권의 행사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철회고지견본(부칙1)과 철회서식견본(부칙2)이 있다.²³⁾ 소비자법의 핵심적 규정내용은 제3장과 제4장이며, 전체적으로 EU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과 편제방식을 거의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1. 법률의 적용범위

제1장 일반규정에서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제1조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계약 및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절차, 이러한 계약에서의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해 정의하여 소비자법의 주된 목적을 설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소비자법에 따른 권리는 소비자가 포기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 부동산의 양도·처분 등에 관한 계약, 주거목적의 임대계약, 기타 소유권계약 및 금융서비스통신판매계약을 제외한 금융서비스계약 등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일반적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는 우선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급부의 주된 성질, 회사

22) 김중길,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6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595쪽 이하 참조.

23) 제Ⅲ장에서 조문에 대한 별도의 법명 표시가 없으면 개정 폴란드소비자법을 의미한다.

명, 주소, 전화 등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대금의 범위, 배송비용 또는 급부와 관련된 기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장기인도계약 및 예약에서도 총 지불액수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대금을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 의한 급부이행의 방법 및 기간, 급부의 품질에 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매매 후 고객서비스 조건의 내용, 보증, 계약기간, 계약철회의 방법과 요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제9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이행되는 일상생활상의 거래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일상생활상의 거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거래 목적 및 빈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가 지나친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명시적인 동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했고, 소비자와 전화상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통상의 전화접속을 위한 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 또는 통신판매계약 등 특수한 소비자계약에서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앞서 열거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 정보 이외에도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제12조에 따라 고객서비스, 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부칙2의 철회서식견본과 철회권 행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계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물건의 반송비용에 관한 정보, 대안적 분쟁조정절차의 도입가능성과 그 이용을 위한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계약체결 전에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에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내용의 부칙1의 철회고지견본에 기술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방식은 부칙1의 철회고지견본을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해야 하나,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DVD, USB, 메모리카드, 전자우편 등의 지속적인 자료저장매체로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수리 또는 수선작업의 행사를 위한 사업자의 노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양 당사자가 서로의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며, 소비자의 지불비용이 폴란드통화로 600즈워티(Zloty, PLN)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가 완화된다.²⁴⁾

24) 폴란드소비자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 해당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의 철회권과 그 효과

폴란드소비자법은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과 통신판매계약에서의 철회권에 관하여 제27조에서 제38조에 걸쳐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철회권의 행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후에 개시되고, 물품의 공급이 계약목적물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개시된다. 물품수령의 주체로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아닌 제3자도 포함하고, 물품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른 철회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때에 소비자는 최초의 철회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²⁵⁾

철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철회기간 내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면 된다. 철회의 통지를 하면 철회가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철회권 행사방식은 부칙2의 철회서식견본을 사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철회의 통지를 받는 전자적 철회서식 방식도 허용된다. 철회서식견본 및 전자적 철회방식의 사용은 철회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철회권의 행사로 인한 법률효과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무가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대금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고, 소비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배송비용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한 저렴한 표준배송방법이 아닌 다른 유형의 배송방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배송비용을 초과한 추가비용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

한편 소비자도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과거 10일에서 반환기간이 4일 연장되었다. 물품반송을 위한 직접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계약상 비용인수에 관해 사전에 설명했거나, 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소비자의 비용부담의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²⁶⁾ 소비자의 주거로 물

25) 폴란드소비자법 제40조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26) Hartwich, Filip, "Der Verbraucherschutz in Polen - eine Übersicht"(<http://polnisches-recht.eu/index.php/ratgeber2/1205-der-verbraucherschutz-in-polen-eine-uebersicht>).

품이 인도되었고, 물품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보통의 우편으로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수거해야 한다. 물품의 가치감소에 대하여 소비자의 배상의무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소비자가 계약목적물을 검사 내지 확인하면서 가치가 감소하거나, 물품의 통상적 이용에서 목적물이 멀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데, 물품의 유형, 성질,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를 소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를 진다.

서비스계약에서의 철회권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는 그 자체의 성질상 본질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전급부에 의한 배상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가액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서비스 또는 물, 가스, 전기, 난방의 공급을 제공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미 제공한 급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산정은 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약정한 전체대금을 기반으로 미래 배분에 따라 배상하고, 전체대금이 과도 할 경우에는 제공된 서비스의 시장가격, 즉 객관적 가치를 근거로 산정하여 배상한다. 그 외에도 주된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부가적 계약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모든 부가적 계약도 비용발생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IV.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U소비자권리지침으로 인해 폴란드 입법자들은 소비자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내용은 민법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보였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개별 특별법들이 분산되어 있던 이전의 법률체계보다는 소비자계약에서 일목요연한 특성을 찾을 수 있고, EU회원국들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과도 보다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민법 개정과 소비자법의 제정으로 전체적으로 폴란드 소비자보호법의 영역이 단순화, 통일화되었으며, 반면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화, 체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폴란드의 소비자 관련 법률에 한하여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폴란드에 한하지 않고 평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EU회원국 전반에서 같은 정도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수행한 바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민법학 및 소비자법학계에서도 민법과 소비자법의 통합 또는 소비자법만의 통합 등 그 규정방식과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

적 내용의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권리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화를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 작업과정이 늦고, 미흡한 상태이다. 개정 이전의 폴란드 소비자법률체계의 상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소비자 관련 법률의 현황과 아주 흡사하다. 이에 새로운 폴란드의 입법체계와 규정내용은 우리 민법과 소비자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주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민법과 소비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EU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 체계 편성 및 적용 여부는 폴란드 입법자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임은 분명하다.

우선 민법 매매 편에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를 규율함을 볼 수 있었다. 모든 매매계약에서 사업자에게 일반화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면 의무의 범위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매수인 및 특히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의 허용 범위의 한계 기준 설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에서 소비재매매에서 보증의 내용도 통일화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과 더불어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을 확장하고 있으며, 담보책임기간도 상당히 늘어났다. 반면에 매수인의 하자제거청구권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제거 또는 교환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제권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자있는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제거 또는 교환과 함께 매도인이 교환한 물건을 재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물건의 해체 및 설치의 비용이 매매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체 및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권리, 의무도 보호하는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법의 민법으로의 통합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폴란드소비자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 및 통신판매계약 등 특수한 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소비자특별법에서도 대등한 정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철회고지견본 또는 철회서식견본의 사용 및 전자적 철회방식 등 철회방식의 간소

화 및 통일화를 위한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적 또는 기술적 처리방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철회기간 통일과 사업자의 의무위반 시 철회기간의 연장도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여지가 있으며, 본질적 특성이 다른 매매계약과 구분되는 서비스계약에 대한 별도의 철회권 규정도 우리의 소비자법을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중길,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_____,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6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 법무부, “폴란드 民法(物權法 · 債務法 · 相續法)”, 「사법행정」 제32권 제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 폴란드민법전,Ustawazdnia23kwietnia1964r.Kodeksywilejny(<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19640160093>).
- 폴란드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Ustawa z dn. 30 maja 2014 r. o prawach konsumenta(<http://isap.sejm.gov.pl/DetailsServlet?id=WDU20140000827>).
- Lane, Alexander/Gralla, Erhardt(Übers.), in: Breidenbach, Stephan(Hrsg.), Handbuch Wirtschaft und Recht in Osteuropa, Bd. 2, PL 200, München 2015.
- Motyka-Mojkowski, Mariusz, Polnisches Zivilrecht AT, Polskie prawo cywilne - część ogólna, Bd. 1, Warszawa, 2010.
- de Vries, Tina, Aktuelle Entwicklungen des polnischen Verbraucherschutzrechts, Wirtschaft und Recht in Osteuropa(WiRO) 2015, S. 229 ff.
- Kordasiewicz, Bogudar, Änderungen im polnischen Zivil- und Handelrecht, in: Horn, Norbert(Hrsg.), Die Neugestaltung des Privatrechts in Mittelosteuropa und Osteuropa. Polen, Russland, Tschechien, Ungarn, München 2002.
- Hartwich, Filip, “Der Verbraucherschutz in Polen - eine Übersicht”(<http://polnisches-recht.eu/index.php/ratgeber2/1205-der-verbraucherschutz-in-polen-eine-uebersicht>).
- Keller, Max-Lion, “E-Commerce Recht in Polen Neue wichtige Bestimmungen des polnischen Verbraucherrechts”, 2015(http://www.it-recht-kanzlei.de/polien-verbraucherrecht-agb.html#abschnitt_4).

